

답례품 허용과 과업계의 능동적 대처

가정의례에 관한 준칙은 1973년에 제정되어 20여년동안 시행되어 왔다. 당시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게 된 것은 관혼상제때 분에 넘치는 절대행위를 억제하고 호화로운 낭비풍조를 없애자는데 있었다.

동법규는 종전에 허용돼 왔던 답례품도 증여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고 경조기간 중에는 친인척 등 제한된 하객과 조객에 한하여 주류와 음식접대를 할 수 있도록 강화했던 것이다.

특히 동법 제4조 1항의 경우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 초청도 일절 못하도록 규제를 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법규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채 사문화 되다시피 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실상이었다.

그 사례의 하나는 혼례때 대부분의 국민이 청첩장을 돌렸으며 공공연히 하객 모두에게 음식을 접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그동안 모순을 안고 있었던 가정의례에 관한 법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문민정부가 오는 6월부터 전면적인 완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겠다.

비록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으나 지켜지지도 않은 법규, 제어의 기능을 할 수 없었던 법을 풀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꽤 크다는 점에서 몇가지 강조 해두고자 한다.

첫째 호화스런 관혼상제라든가, 낭비적이며 사치스런 의례 행위는 국민 모두의 성숙된 의식의 전환으로 철폐가 가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호텔 예약이 허용된다해서 으리으리한 접대나 잔치 등의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로는 혼례의 경우 대부분 정오께를 기점으로 하여 심지어는 오후 5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점심이나 저녁도 아닌 때에 때도없이 음식을 들먹여 하고 접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낭비적 요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 정서에도 알맞고 따라서 검소하면서도 답례의 가치가 있는 답례품 증여 문제는 보다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특히 우리 제과업계는 답례품과 깊은 연관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업계의 중지를 모으고 연구가 뒤따라야 할 시점에 있다. 답례품 증여가 허용됐던 지난날처럼 카스테라나 혹은 찹쌀떡과 같은 단조롭고 틀에 박힌 듯한 품목이 아니라 적어도 새로운 내음을 풍길 수 있는 품목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더 부연한다면 선도가 있어야 하고 맛이 살아나야 하며 美的 감각이 드리워진 그러면서도 포장면에서 우아한 맛을 물씬 풍김으로써 선호할 수 있고 답례품으로서의 값어치를 지녀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가격면에서도 음식접대를 하는 경우 1인당 최저 12,000원선으로 본다면 그 이하의 가격으로 품위도 살리는 동시에 검소한 느낌까지 같이 담아 본다면 정서적 측면에서도 타할 것이 없을 것이고 건전한 의례 행위의 정착에도 일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더 곁들인다면 답례품으로 가능한 다양성이 있고 종류도 많은 여타의 상품들이 흥수처럼 넘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설사 그러한 정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답례품이 허용되는 한 우리제과업계는 결코 남의 것으로 돌리거나 나태한 자세로 임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관점에서 거듭 우리 모두의 슬기와 중지를 모아 대처 할 수 있는 능동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에 있음을 역설해 두고자 하는 바이다. [E]